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09호 2021. 1. 14.(목)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97호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2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 ----- 3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48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63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30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4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사천시 훈령 제397호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월 1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별표 1] <개정 2021. 1. 14.>

##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6조제5항 관련)

### 1. 단순노무원·도로보수원·환경미화원의 정수

부 서 별	계	단순노무원					도 로 보수원 ⑤	환 경 미화원 ⑥
		소계	시 설 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①	현장지도 단속감시 상담인부 ②	자격을 요하는 인부 ③	단순잡역 조무인부 ④		
총 계	<u>182</u>	<u>117</u>	2	5	<u>29</u>	81	8	<u>57</u>
본 청	소 계	<u>93</u>	<u>85</u>	2	5	<u>16</u>	62	8
	행 정 과	<u>12</u>	<u>12</u>			<u>5</u>	7	
	주안생활지원과	7	7			2	5	
	노인장애인과	6	6			3	3	
	여성가족과	10	10	1		5	4	
	세 무 과	3	3				3	
	회 계 과	1	1				1	
	문화체육과	7	7				7	
	관광진흥과	<u>3</u>	<u>3</u>				<u>3</u>	
	환경보호과	1	1				1	
	민원교통과	8	8		4		4	
	정보통신과	3	3				3	
	도 시 과	2	2		1		1	
	건 설 과	2	2				2	
	도 로 과	11	3	1			2	8
	우주항공과	1	1				1	
	지역경제과	2	2				2	
	녹지공원과	<u>10</u>	<u>10</u>			<u>1</u>	9	
	토지관리과	4	4				4	
의 회	소 계	1	1				1	
	의회사무국	1	1				1	
직 속 기 관	소 계	30	30			13	17	
	보 건 소	13	13			13		
	농업기술센터	17	17				17	
사 업 소	소 계	<u>57</u>						<u>57</u>
	환경사업소	<u>57</u>						<u>57</u>
출 장 소	소 계	1	1				1	
	신수출장소	1	1				1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사천시 고시 제2021-22호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2012. 9. 13.)로 최초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한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4일

## 사 천 시 장

### □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기타 제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함

####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번지 일원
- 면 적: 기정 271,060㎡, 변경 248,494㎡ (감 22,566㎡)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가. 개발기간

- 당초: 2012. 09. 13. ~ 2014. 12. 31.
- 변경: 2012. 09. 13. ~ 2022. 12. 31.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 5. 주요 유치업종 (변경)

- 당초: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제조업(C31)
- 변경: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H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가. 사업시행자 : 당초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구종배  
 변경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최진태

나. 주 소 : 당초 -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2번지  
 변경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

###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전	답	구	도	대	임	창
필지수 (개소)	당초	60	18	9	9	-	2	20	2
	변경	48	18	2	9	1	2	16	-
면 적 (㎡)	당초	271,060	89,669	11,944	4,477	-	7,744	155,624	1,602
	변경	248,494	89,937	5,127	4,399	293	7,765	140,973	-
구성비 (%)	당초	100.0	33.1	4.4	1.6	-	2.9	57.4	0.6
	변경	100.0	36.2	2.1	1.8	0.1	3.1	56.7	-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토 교통부	농림 축산식품부	기획 재정부		
필 지 수	당초	60	13	9	3	1	47
	변경	48	10	1	-	9	38
면적(㎡)	당초	271,060	5,824	4,581	549	694	265,236
	변경	248,494	4,692	293	-	4,399	243,802
구성비(%)	당초	100.0	2.1	1.7	0.1	0.3	97.9
	변경	100.0	1.9	0.1	-	1.8	98.1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271,060	248,494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68,450	158,006	62.1	63.6		
	BL1	33,900	58,825	12.5	23.7	
	BL2	36,950	74,848	13.6	30.1	
	BL3	69,700	10,495	25.7	4.2	
	BL4	10,900	13,838	4.0	5.6	
	BL5	17,000	-	6.3	-	
지원시설용지	3,630	4,205	1.3	1.7		
공공시설용지	98,980	86,283	36.6	34.7		
	도로	43,250	34,479	15.9	13.9	
	배수지	1,500	1,824	0.6	0.7	
	저류지	5,850	5,850	2.1	2.4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1,550	0.6	0.6	
	주차장1	1,500	2,070	0.6	0.8	
	주차장2	1,500	1,000	0.6	0.4	
	공원	2,740	3,943	1.0	1.6	
	완충녹지	41,090	35,567	15.2	14.3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나. 기반시설계획

### 1) 교통시설

#### 가) 도로 (변경)

#####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m<sup>2</sup>)

구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5	3,244 '(2,392)	53,249 '(43,250)	2	1,296 '(805)	22,835 '(18,516)	3	1,948 '(1,587)	30,414 '(24,734)	-	-	-
	변경	7	2,557 '(2,066)	38,754 '(34,479)	2	1,107 '(616)	17,671 '(13,396)	4	1,330 '(1,330)	20,352 '(20,352)	1	120 '(120)	731 '(731)
중로	기정	5	3,244 '(2,392)	53,249 '(43,250)	2	1,296 '(805)	22,835 '(18,516)	3	1,948 '(1,587)	30,414 '(24,734)	-	-	-
	변경	5	2,384 '(1,893)	37,791 '(33,516)	2	1,107 '(616)	17,671 '(13,396)	3	1,277 '(1,277)	20,120 '(20,120)	-	-	-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2	173 '(173)	963 '(963)	-	-	-	1	53 '(53)	232 '(232)	1	120 '(120)	731 '(731)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2	20~26	집산 도로	1,072 '(581)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1	42	20~26.25	집산 도로	883 '(392)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	노폭확장 연장축소
기정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	가각변경
신설	중로	1	56	20	집산 도로	235 '(0)	소로1-2	중로1-42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주진입도로)
기정	중로	2	50	15~18	집산 도로	904 '(654)	사다리 산36-1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2	50	16~19.25	집산 도로	501 '(501)	산업용지 BL1	완충녹지52	일반 도로	-	-	노폭확장 연장축소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712 <sup>1</sup> (601)	사다리 182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444 <sup>1</sup> (444)	산업용지 BL1	중로2-50	일반 도로	-	-	연장축소
기정	중로	2	52	15~18	집산 도로	332 <sup>1</sup> (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2	52	15~18.25	집산 도로	332 <sup>1</sup> (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	-	노폭확장 가각변경
신설	소로	2	257	8	국지 도로	53 <sup>1</sup> (53)	중로2-51	산업단지경계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신설	소로	3	157	6	국지 도로	120 <sup>1</sup> (120)	중로2-50	유수지⑨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 나) 주차장 (변경)

###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28	주차장	사다리 217-1번지	1,500	감) 500	1,00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변 경	29	주차장	사다리 산26-10번지	1,500	증) 570	2,07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2) 공간시설

### 가) 공원 (변경)

###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4	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27-1번지	2,740	감) 487	2,25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신설	가	공원	소공원	사다리 217-1번지	-	증) 1,690	1,690	-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나) 녹지 (변경)

###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일련 번호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41,090	감) 5,523	35,567		
변 경	4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82-1	8,583	증) 6,897	15,4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폐 지	47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10번지	487	감) 487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폐 지	48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10번지	842	감) 842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변 경	49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4번지	5,571	감) 612	4,959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폐 지	50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39번지	5,690	감) 5,690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폐 지	51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17,014	감) 17,014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변 경	52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2,903	증) 12,255	15,158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3) 유통공급시설

### 가) 수도공급설비 (변경)

#### ○ 용수량

구 분	용수수요량(㎡/일)	비 고
계	2,087	계획용수량 : 2,087㎡/일  배수지용량 V=1,200㎡ (체류시간12시간)
축동일반산업단지	663	
대동일반산업단지	254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790	
탐리지역	380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수도공급설비	사다리 135-2번지	1,500	증) 324	1,824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위치이동 면적증가

## 4) 방재시설

### 가) 우수지 (변경)

#### ○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우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5,850	-	5,8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위치이동

## 5) 환경기초시설

###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 ○ 오·폐수량

구 분	오폐수량(㎥/일)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313.5	197.8	계획오·폐수량 : 197.8㎥/일
산업폐수	111.9	114.5	
생활오수	201.6	83.3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1,550	-	1,5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위치이동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9.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총 사업비 51,368백만원 중 사업시행자 자기자본금 300백만원, 타인자본인 금융권대출 40,000백만원, 투자금 10,000백만원, 분양수익금으로 1,068백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투자내역	투자액(천원)	
		기정	변경
2011년	용지비 및 보상비	1,000,000	-
	기타비	1,000,000	-
	계	2,000,000	-
2012년 ~ 2014년	용지비 및 보상비	16,000,000	-
	공사비	30,132,000	-
	기타비용	3,800,000	-
	계	51,732,000	-
2015년	용지비 및 보상비	-	2,500,000
	공사비	-	1,155,000
	기타비용	-	800,000
	계	-	4,455,000
2016년	용지비 및 보상비	-	800,000
	공사비	-	4,169,000
	기타비용	-	1,000,000
	계	-	5,969,000
2017년	용지비 및 보상비	-	2,500,000
	공사비	-	-
	기타비용	-	500,000
	계	-	3,000,000
2018년	용지비 및 보상비	-	7,700,000
	공사비	-	-
	기타비용	-	3,200,000
	계	-	10,900,000
2019년	용지비 및 보상비	-	1,620,000
	공사비	-	600,000
	기타비용	-	1,800,000
	계	-	4,020,000
2020년 ~ 2022년	용지비 및 보상비	-	1,768,000
	공사비	-	19,556,000
	기타비용	-	1,700,000
	계	-	23,024,000
합 계		51,932,000	51,368,000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붙임) (변경)

##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구 분	업 종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	168,450	158,006	100.0	100.0
제 조 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	36,128	-	2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105,450	13,838	62.6	8.8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11,000	10,495	6.5	6.6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52,000	58,299	30.9	36.8
운수 및 창고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52)	-	39,246	-	24.9

※ 산업단지내 전체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가능(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개발되는 토지  
○ 사천시 무상귀속

구 분	면 적 (m <sup>2</sup> )		구성비 (%)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면 적	271,060	248,494	100.0	100.0	
무상귀속면적	98,980	81,663	36.6	32.9	
도로	43,250	34,479	15.9	13.9	
주차장	3,000	-	1.2	-	
배수지	1,500	1,824	0.6	0.7	
저류지	5,850	5,850	2.1	2.4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	0.6	-	
공원	2,740	3,943	1.0	1.6	
완충녹지	41,090	35,567	15.2	14.3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 사업시행자 귀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면 적	271,060	248,494	100.0	100.0	
사업자귀속면적	172,080	166,831	63.4	67.1	
산업시설용지	168,450	158,006	62.1	63.6	
지원시설용지	3,630	4,205	1.3	1.7	
주차장	-	3,070	-	1.2	
폐수종말처리시설	-	1,550	-	0.6	

##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71,060	-	271,060	100.0		
도시 지역	공업 지역	소 계	271,060	감) 22,566	248,494	91.7	
		일반공업지역	271,060	감) 22,566	248,494	91.7	
	녹지 지역	소 계	-	증) 19,091	19,091	7.0	
		보전녹지지역	-	증) 12,550	12,550	4.6	
		자연녹지지역	-	증) 6,541	6,541	2.4	
비도시 지역	관리 지역	소 계	-	증) 3,475	3,475	1.3	
		계획관리지역	-	증) 3,475	3,475	1.3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이하)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경			
-	189-1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12,550	100이하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 및 구역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환원)
-	216-3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6,541	100이하	
-	214-5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3,475	100이하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 일원	271,060	감) 22,566	248,494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17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 일원	면적감소 271,060㎡→248,494㎡ 감) 22,566㎡	지적분할결과 반영 및 민원해소를 위한 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271,060	248,494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68,450	158,006	62.1	63.6		
	BL1	33,900	58,825	12.5	23.7	
	BL2	36,950	74,848	13.6	30.1	
	BL3	69,700	10,495	25.7	4.2	
	BL4	10,900	13,838	4.0	5.6	
	BL5	17,000	-	6.3	-	
지원시설용지	3,630	4,205	1.3	1.7		
공공시설용지	98,980	86,283	36.6	34.7		
	도로	43,250	34,479	15.9	13.9	
	배수지	1,500	1,824	0.6	0.7	
	저류지	5,850	5,850	2.1	2.4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1,550	0.6	0.6	
	주차장1	1,500	2,070	0.6	0.8	
	주차장2	1,500	1,000	0.6	0.4	
	공원	2,740	3,943	1.0	1.6	
	완충녹지	41,090	35,567	15.2	14.3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m<sup>2</sup>)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5	3,244 ' (2,392)	53,249 ' (43,250)	2	1,296 ' (805)	22,835 ' (18,516)	3	1,948 ' (1,587)	30,414 ' (24,734)	-	-	-
	변경	7	2,557 ' (2,066)	38,754 ' (34,479)	2	1,107 ' (616)	17,671 ' (13,396)	4	1,330 ' (1,330)	20,352 ' (20,352)	1	120 ' (120)	731 ' (731)
중로	기정	5	3,244 ' (2,392)	53,249 ' (43,250)	2	1,296 ' (805)	22,835 ' (18,516)	3	1,948 ' (1,587)	30,414 ' (24,734)	-	-	-
	변경	5	2,384 ' (1,893)	37,791 ' (33,516)	2	1,107 ' (616)	17,671 ' (13,396)	3	1,277 ' (1,277)	20,120 ' (20,120)	-	-	-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2	173 ' (173)	963 ' (963)	-	-	-	1	53 ' (53)	232 ' (232)	1	120 ' (120)	731 ' (731)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2	20~26	집산 도로	1,072 '(581)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1	42	20~26.25	집산 도로	883 '(392)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	노폭확장 연장축소
기정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	가각변경
신설	중로	1	56	20	집산 도로	235 1(0)	소로1-2	중로1-42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주진입도로)
기정	중로	2	50	15~18	집산 도로	904 '(654)	사다리 산36-1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2	50	16~19.25	집산 도로	501 '(501)	산업용지 BL1	완충녹지52	일반 도로	-	-	노폭확장 연장축소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712 <sup>1</sup> (601)	사다리 182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444 <sup>1</sup> (444)	산업용지 BL1	중로2-50	일반 도로	-	-	연장축소
기정	중로	2	52	15~18	집산 도로	332 <sup>1</sup> (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2	52	15~18.25	집산 도로	332 <sup>1</sup> (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	-	노폭확장 가각변경
신설	소로	2	257	8	국지 도로	53 <sup>1</sup> (53)	중로2-51	산업단지경계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신설	소로	3	157	6	국지 도로	120 <sup>1</sup> (120)	중로2-50	유수지⑨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1류 42호선	중로1류 4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폭확장 및 연장축소</li> <li>- 폭원 : 20m~26m→20m~26.25m</li> <li>- 연장 : 1,072m→88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 구역축소에 따른 노폭확장 도로 연장축소</li> </ul>
중로1류 43호선	중로1류 43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각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로2-50호선 연장축소에 따른 가각변경</li> </ul>
-	중로1류 56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li> <li>- 폭원 : 20m</li> <li>- 연장 : 23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로1-42호선 연장축소에 따른 노선신설</li> </ul>
중로2류 50호선	중로2류 50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폭확장 및 연장축소</li> <li>- 폭원 : 15m~18m→16m~19.25m</li> <li>- 연장 : 904m→501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 구역축소에 따른 노폭확장 도로 연장축소</li> </ul>
중로2류 51호선	중로2류 51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축소</li> <li>- 폭원 : 15m</li> <li>- 연장 : 712m→44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 구역축소에 따른 도로 연장축소</li> </ul>
중로2류 52호선	중로2류 5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폭확장 및 가각변경</li> <li>- 폭원 : 15m~18m→15m~18.2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로2-51호선 연장축소에 따른 노폭확장 및 가각변경</li> </ul>
-	소로2류 257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li> <li>- 폭원 : 8m</li> <li>- 연장 : 5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내 배수지 관리 및 부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노선 신설</li> </ul>
-	소로3류 157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li> <li>- 폭원 : 6m</li> <li>- 연장 : 12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동일반산업단지내 발생하는 일부 우수, 오수 및 폐수처리를 위한 노선 신설</li> </ul>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나) 주차장

###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28	주차장	사다리 217-1번지	1,500	감) 500	1,00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변 경	29	주차장	사다리 산26-10번지	1,500	증) 570	2,07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8	노외주차장	· 위치이동 및 면적감소 - A = 1,500㎡→1,000㎡	· 소공원④의 위치이동에 따른 변경
29	노외주차장	· 위치이동 및 면적감소 - A = 1,500㎡→2,070㎡	· 지원시설의 위치이동에 따른 변경

## 2) 공간시설

### 가) 공원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4	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27-1번지	2,740	감) 487	2,25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신설	가	공원	소공원	사다리 217-1번지	-	증) 1,690	1,690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4	소공원	· 위치이동 및 면적감소 - A = 2,740→2,253㎡	·소송민원인 부지와와의 이격을 위한 위치 이동 및 면적증가
가	소공원	· 공원신설 - A = 1,690㎡	·지원시설 이용객을 위한 공원신설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나) 녹지

###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41,090	감) 5,523	35,567		
변 경	4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82-1	8,583	증) 6,897	15,4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폐 지	47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10번지	487	감) 487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폐 지	48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10번지	842	감) 842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변 경	49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4번지	5,571	감) 612	4,959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폐 지	50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39번지	5,690	감) 5,690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폐 지	51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17,014	감) 17,014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변 경	52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2,903	증) 12,255	15,158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6	완충녹지	· 면적증가 - A = 8,583㎡ → 15,45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⑤과 의 합병으로 면적증가
47	완충녹지	· 폐지 - A = 487㎡ → 0㎡	· 지원시설, 주차장⑳, 폐수종말처리시설㉑, 우수지㉒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폐 지
48	완충녹지	· 폐지 - A = 842㎡ → 0㎡	· 지원시설, 주차장⑳, 폐수종말처리시설㉑, 우수지㉒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폐 지
49	완충녹지	· 면적감소 - A = 5,571㎡ → 4,959㎡	· 구역축소에 따른 면적감소
50	완충녹지	· 폐지 - A = 5,690㎡ → 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④과 의 합병으로 폐지
51	완충녹지	· 폐지 - A = 17,014㎡ → 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⑤과 의 합병으로 폐지
52	완충녹지	· 면적증가 - A = 2,903㎡ → 15,158㎡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⑤과 의 합병으로 면적증가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3) 유통공급시설

#### 가) 수도공급설비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수도공급설비	사다리 135-2번지	1,500	증) 324	1,824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위치이동 면적증가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수도공급설비	· 위치이동 및 면적증가 - A = 1,500→1,824㎡	· 원활한 상수공급을 위한 위치이동 및 면적증가

### 4) 방재시설

#### 가) 우수지

##### ○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우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5,850	-	5,8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위치이동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우수지 (저류시설)	· 위치이동	· 완충녹지④⑦,④⑧ 폐지에 따른 위치이동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5) 환경기초시설

###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1,550	-	1,5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위치이동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6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위치이동	· 완충녹지 <sup>47),48)</sup> 폐지에 따른 위치이동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	I -1	I -1	11,900	12,294	I -1	I -1	1,500	1,000	주차장 <sup>28)</sup>
변경	-	I -2	I -2			I -2	I -2	1,500	2,070	주차장 <sup>29)</sup>
변경	-	I -3	I -3			I -3	I -3	1,550	1,550	폐수종말처리시설 <sup>6)</sup>
변경	-	I -4	I -4			I -4	I -4	5,850	5,850	저류시설 <sup>9)</sup>
변경	-	I -5	I -5			I -5	I -5	1,500	1,824	배수시설 <sup>8)</sup>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sup>2</sup>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	Ⅱ-BL1	Ⅱ-BL1	168,450	158,006	Ⅱ-BL1	Ⅱ-BL1	33,900	58,825	분양 후 획지 분할
폐지	-	Ⅱ-BL2	-			Ⅱ-BL2-1	-	13,300	-	
						Ⅱ-BL2-2	-	23,650	-	
변경	-	Ⅱ-BL3	Ⅱ-BL2			Ⅱ-BL3-1	Ⅱ-BL2	12,800	74,848	분양 후 획지 분할
폐지	-					Ⅱ-BL3-2	-	12,800	-	
폐지	-					Ⅱ-BL3-3	-	41,100	-	
폐지	-					Ⅱ-BL3-4	-	3,000	-	
변경	-	Ⅱ-BL4	Ⅱ-BL3			Ⅱ-BL4	Ⅱ-BL3	10,900	10,495	분양 후 획지 분할
변경	-	Ⅱ-BL5	Ⅱ-BL4			Ⅱ-BL5-1	Ⅱ-BL4	8,000	13,838	분양 후 획지 분할
폐지	-					Ⅱ-BL5-2	-	9,000	-	
변경	-	Ⅲ	Ⅲ	3,630	4,205	Ⅲ	Ⅲ	3,630	4,205	분양 후 획지 분할
변경	-	Ⅳ-1-1	Ⅳ-1-1	43,830	39,460	Ⅳ-1-1	Ⅳ-1-1	8,583	15,523	완충녹지④⑥
폐지	-	Ⅳ-1-2	-			Ⅳ-1-2	-	487	-	
폐지	-	Ⅳ-1-3	-			Ⅳ-1-3	-	842	-	
변경	-	Ⅳ-1-4	Ⅳ-1-2			Ⅳ-1-4	Ⅳ-1-2	5,571	4,959	완충녹지④⑨
폐지	-	Ⅳ-1-5	-			Ⅳ-1-5	-	5,690	-	
폐지	-	Ⅳ-1-6	-			Ⅳ-1-6	-	17,014	-	
변경	-	Ⅳ-1-7	Ⅳ-1-3			Ⅳ-1-7	Ⅳ-1-3	2,903	15,158	완충녹지⑤②
변경	-	Ⅳ-2	Ⅳ-2-1			Ⅳ-2	Ⅳ-2-1	2,740	2,253	공원④④
			Ⅳ-2-2			Ⅳ-2	Ⅳ-2-2	-	1,690	공원④⑤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	II-BL1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li> <li>• 창고 및 운송관련업</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li> <li>•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li> <li>•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li> <li>※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층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층 이하</li> </ul>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축선	-	-
-	II-BL2 → -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li> </ul>	-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li> </ul>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li> </ul>	-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이하</li> </ul>	-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이하</li> </ul>	-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층 이하</li> </ul>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축선	-	-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	II-BL3 → II-BL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li> <li>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li> <li>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li> <li>※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시설</li> <li>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331)</li> <li>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332)</li> <li>석면,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C23994)</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축선	-	-
-	II-BL4 → II-BL3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li> <li>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li> <li>※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시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축선	-	-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	II-BL5 → II-BL4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li> <li>•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li> <li>※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li> </ul>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 5층 이하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축선	-	-
-	III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li> </ul>	좌 동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li> </ul>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 어 내 용	비 고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42호선과 중로 1-43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1-43호선과 중로 2-50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0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1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0호선과 소로 3-157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 소공원④

#### 가) 공원조성계획

#### □ 부지총괄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사다리 산27-1번지	2,740	감) 487	2,253	
변경	보행로		125	증) 183	308	
변경	운동시설		415	감) 349	66	
신설	휴양시설		-	증) 58	58	
변경	녹 지		2,200	증) 379	1,821	

#### □ 시설총괄표

구분	시 설 명	면 적(㎡)		시설규모(㎡)				비 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740	2,253	32	66	-	66	
변경	보행로	125	308	-	-	-	-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운동시설	415	66	-	66	-	66	파고라1동
변경	휴양시설	415	58	-	-	-	-	
변경	녹 지	2,200	1,821	32	-	32	-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면 적(m <sup>2</sup> )		위 치	시설규모(m <sup>2</sup>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740	2,253	사다리 산27-1번지	32	66	32	66	1	1	
보행로	1	1	125	308		-	-	-	-	-	-	
운동시설	2	2	415	66		-	66	-	66	-	1	1동
휴양시설	-	3	-	58		-	-	-	-	-	-	
녹 지	3	4	2,200	1,821		32	-	32	-	1	-	

소공원㉔

가) 공원조성계획

부지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사다리 217-1번지	-	증) 1,690	1,690	
신설	보행로		-	증) 189	189	
신설	운동시설		-	증) 106	106	
신설	휴양시설		-	증) 36	36	
신설	녹 지		-	증) 1,359	1,359	

시설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비 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1,690	-	106	-	106	
신설	보행로	-	189	-	-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운동시설	-	106	-	106	-	106	파고라1동
신설	휴양시설	-	36	-	-	-	-	
신설	녹 지	-	1,359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면 적(m <sup>2</sup> )		위 치	시설규모(m <sup>2</sup>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1,690	-	106	-	106	-	1			
보 행 로	-	1	-	189	-	-	-	-	-			
운동시설	-	2	-	106	사다리 217-1번지	-	106	-	106	-	1	1동
휴양시설	-	3	-	36	-	-	-	-	-	-		
녹 지	-	4	-	1,359	-	-	-	-	-	-		

###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산업입지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작성되는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구성)** 본 지침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에, 제3장은 지원시설용지에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사천시 관련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최상층수에 해당하는 층의 바닥면적은 바로 아래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한다.)
7.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9.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6조 (건축물의 용도)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 제 내 용	비 고
산업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li> <li>•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 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23(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D35114(태양에너지발전업)-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li> <li>•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제조업</li> </ul>	

제7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300	5층이하
건폐율	최저층수	70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한다.

③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하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제8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li> <li>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li>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li> </ul>

**제9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주차장)** 산업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제11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12조 (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 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 제 내 용
지원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li> </ul> </li> <li>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li> </ul> </li> <li>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시설</li> </ul> </li> </ul>

**제13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용적률	최고층수	300	5층이하
건폐율	최저층수	70	-

- ② 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적용한다.
- ③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하로 한다.

**제14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자 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계단실과 승강기 외벽의 50%이상 투시형으로 할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③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와 보행자전용도로변과의 고저차는 2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li> <li>•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li>•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 없음</li> </ul>

- ②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차장)** 지원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제18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제4장 기타사항

**제19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 3m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3. 2의 규정에 의해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 가로 60cm이내, 세로 200cm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③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입체형 간판 또는 차양, 현수막을 이용한 간판을 권장한다.

⑤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관련 조례 등에 따른다.

**제20조 (가설건축물 및 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21조 (녹지공간 식재계획)** ① 완충녹지 및 공원내 산책로 주변으로 계절별 수종을 식재해야 한다.

##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2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71,060	-	271,060	100.0	
도시 지역	공업 지역	소 계	271,060	감) 22,566	248,494	91.7	
		일반공업지역	271,060	감) 22,566	248,494	91.7	
	녹지 지역	소 계	-	증) 19,091	19,091	7.0	
		보전녹지지역	-	증) 12,550	12,550	4.6	
		자연녹지지역	-	증) 6,541	6,541	2.4	
비도시 지역	관리 지역	소 계	-	증) 3,475	3,475	1.3	
		계획관리지역	-	증) 3,475	3,475	1.3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m <sup>2</sup> )	용적률 (%이하)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경			
-	189-1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12,550	100이하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 및 구역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환원)
-	216-3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6,541	100이하	
-	214-5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3,475	100이하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 일원	271,060	감) 22,566	248,494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17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 일원	면적감소 271,060㎡→248,494㎡ 감) 22,566㎡	지적분할결과 반영 및 민원해소를 위한 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감소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271,060	248,494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68,450	158,006	62.1	63.6		
	BL1	33,900	58,825	12.5	23.7	
	BL2	36,950	74,848	13.6	30.1	
	BL3	69,700	10,495	25.7	4.2	
	BL4	10,900	13,838	4.0	5.6	
	BL5	17,000	-	6.3	-	
지원시설용지	3,630	4,205	1.3	1.7		
공공시설용지	98,980	86,283	36.6	34.7		
	도로	43,250	34,479	15.9	13.9	
	배수지	1,500	1,824	0.6	0.7	
	저류지	5,850	5,850	2.1	2.4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1,550	0.6	0.6	
	주차장1	1,500	2,070	0.6	0.8	
	주차장2	1,500	1,000	0.6	0.4	
	공원	2,740	3,943	1.0	1.6	
	완충녹지	41,090	35,567	15.2	14.3	

# 사천 시 공 보

제 709 호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m<sup>2</sup>)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5	3,244 ' (2,392)	53,249 ' (43,250)	2	1,296 ' (805)	22,835 ' (18,516)	3	1,948 ' (1,587)	30,414 ' (24,734)	-	-	-
	변경	7	2,557 ' (2,066)	38,754 ' (34,479)	2	1,107 ' (616)	17,671 ' (13,396)	4	1,330 ' (1,330)	20,352 ' (20,352)	1	120 ' (120)	731 ' (731)
중로	기정	5	3,244 ' (2,392)	53,249 ' (43,250)	2	1,296 ' (805)	22,835 ' (18,516)	3	1,948 ' (1,587)	30,414 ' (24,734)	-	-	-
	변경	5	2,384 ' (1,893)	37,791 ' (33,516)	2	1,107 ' (616)	17,671 ' (13,396)	3	1,277 ' (1,277)	20,120 ' (20,120)	-	-	-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2	173 ' (173)	963 ' (963)	-	-	-	1	53 ' (53)	232 ' (232)	1	120 ' (120)	731 ' (731)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2	20~26	집산 도로	1,072 '(581)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1	42	20~26.25	집산 도로	883 '(392)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	노폭확장 연장축소
기정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	가각변경
신설	중로	1	56	20	집산 도로	235 1(0)	소로1-2	중로1-42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주진입도로)
기정	중로	2	50	15~18	집산 도로	904 '(654)	사다리 산36-1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2	50	16~19.25	집산 도로	501 '(501)	산업용지 BL1	완충녹지52	일반 도로	-	-	노폭확장 연장축소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712 <sup>1</sup> (601)	사다리 182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444 <sup>1</sup> (444)	산업용지 BL1	중로2-50	일반 도로	-	-	연장축소
기정	중로	2	52	15~18	집산 도로	332 <sup>1</sup> (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변경	중로	2	52	15~18.25	집산 도로	332 <sup>1</sup> (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	-	노폭확장 가각변경
신설	소로	2	257	8	국지 도로	53 <sup>1</sup> (53)	중로2-51	산업단지경계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신설	소로	3	157	6	국지 도로	120 <sup>1</sup> (120)	중로2-50	유수지⑨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류 42호선	중로1류 42호선	• 노폭확장 및 연장축소 - 폭원 : 20m~26m→20m~26.25m - 연장 : 1,072m→883m	• 산업단지 구역축소에 따른 노폭확장 도로 연장축소
중로1류 43호선	중로1류 43호선	• 가각변경	• 중로2-50호선 연장축소에 따른 가각변경
-	중로1류 56호선	• 노선신설 - 폭원 : 20m - 연장 : 235m	• 중로1-42호선 연장축소에 따른 노선신설
중로2류 50호선	중로2류 50호선	• 노폭확장 및 연장축소 - 폭원 : 15m~18m→16m~19.25m - 연장 : 904m→501m	• 산업단지 구역축소에 따른 노폭확장 도로 연장축소
중로2류 51호선	중로2류 51호선	• 연장축소 - 폭원 : 15m - 연장 : 712m→444m	• 산업단지 구역축소에 따른 도로 연장축소
중로2류 52호선	중로2류 52호선	• 노폭확장 및 가각변경 - 폭원 : 15m~18m→15m~18.25m	• 중로2-51호선 연장축소에 따른 노폭확장 및 가각변경
-	소로2류 257호선	• 노선신설 - 폭원 : 8m - 연장 : 53m	• 단지내 배수지 관리 및 부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노선 신설
-	소로3류 157호선	• 노선신설 - 폭원 : 6m - 연장 : 120m	• 축동일반산업단지내 발생하는 일부 우수, 오수 및 폐수처리를 위한 노선 신설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나) 주차장

###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28	주차장	사다리 217-1번지	1,500	감) 500	1,00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변 경	29	주차장	사다리 산26-10번지	1,500	증) 570	2,07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8	노외주차장	· 위치이동 및 면적감소 - A = 1,500㎡→1,000㎡	· 소공원④의 위치이동에 따른 변경
29	노외주차장	· 위치이동 및 면적감소 - A = 1,500㎡→2,070㎡	· 지원시설의 위치이동에 따른 변경

## 2) 공간시설

### 가) 공원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4	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27-1번지	2,740	감) 487	2,25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신설	가	공원	소공원	사다리 217-1번지	-	증) 1,690	1,690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4	소공원	· 위치이동 및 면적감소 - A = 2,740→2,253㎡	·소송민원인 부지와의 이격을 위한 위치 이동 및 면적증가
가	소공원	· 공원신설 - A = 1,690㎡	·지원시설 이용객을 위한 공원신설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나) 녹지

###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41,090	감) 5,523	35,567		
변 경	4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82-1	8,583	증) 6,897	15,4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폐 지	47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10번지	487	감) 487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폐 지	48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10번지	842	감) 842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변 경	49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4번지	5,571	감) 612	4,959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폐 지	50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39번지	5,690	감) 5,690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폐 지	51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17,014	감) 17,014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변 경	52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2,903	증) 12,255	15,158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6	완충녹지	· 면적증가 - A = 8,583㎡ → 15,45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⑤과 의 합병으로 면적증가
47	완충녹지	· 폐지 - A = 487㎡ → 0㎡	· 지원시설, 주차장⑳, 폐수종말처리시설⑥, 유수지⑨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폐 지
48	완충녹지	· 폐지 - A = 842㎡ → 0㎡	· 지원시설, 주차장⑳, 폐수종말처리시설⑥, 유수지⑨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폐 지
49	완충녹지	· 면적감소 - A = 5,571㎡ → 4,959㎡	· 구역축소에 따른 면적감소
50	완충녹지	· 폐지 - A = 5,690㎡ → 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④과 의 합병으로 폐지
51	완충녹지	· 폐지 - A = 17,014㎡ → 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⑤과 의 합병으로 폐지
52	완충녹지	· 면적증가 - A = 2,903㎡ → 15,158㎡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⑤과 의 합병으로 면적증가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3) 유통공급시설

### 가) 수도공급설비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수도공급설비	사다리 135-2번지	1,500	증) 324	1,824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위치이동 면적증가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수도공급설비	· 위치이동 및 면적증가 - A = 1,500→1,824㎡	· 원활한 상수공급을 위한 위치이동 및 면적증가

## 4) 방재시설

### 가) 유수지

####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유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5,850	-	5,8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위치이동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유수지 (저류시설)	· 위치이동	· 완충녹지④⑦,④⑧ 폐지에 따른 위치이동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5) 환경기초시설

###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1,550	-	1,5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위치이동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위치이동	· 완충녹지⑴,⑵ 폐지에 따른 위치이동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	I-1	I-1	11,900	12,294	I-1	I-1	1,500	1,000	주차장㉘
변경	-	I-2	I-2			I-2	I-2	1,500	2,070	주차장㉙
변경	-	I-3	I-3			I-3	I-3	1,550	1,550	폐수종말처리시설 ⑥
변경	-	I-4	I-4			I-4	I-4	5,850	5,850	저류시설⑨
변경	-	I-5	I-5			I-5	I-5	1,500	1,824	배수시설⑧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sup>2</sup>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	II-BL1	II-BL1	168,450	158,006	II-BL1	II-BL1	33,900	58,825	분양 후 획지 분할
폐지	-	II-BL2	-			II-BL2-1	-	13,300	-	
						II-BL2-2	-	23,650	-	
변경	-	II-BL3	II-BL2			II-BL3-1	II-BL2	12,800	74,848	분양 후 획지 분할
폐지	-					II-BL3-2	-	12,800	-	
폐지	-					II-BL3-3	-	41,100	-	
폐지	-					II-BL3-4	-	3,000	-	
변경	-	II-BL4	II-BL3			II-BL4	II-BL3	10,900	10,495	분양 후 획지 분할
변경	-	II-BL5	II-BL4			II-BL5-1	II-BL4	8,000	13,838	분양 후 획지 분할
폐지	-					II-BL5-2	-	9,000	-	
변경	-	III	III	3,630	4,205	III	III	3,630	4,205	분양 후 획지 분할
변경	-	IV-1-1	IV-1-1	43,830	39,460	IV-1-1	IV-1-1	8,583	15,523	완충녹지④⑥
폐지	-	IV-1-2	-			IV-1-2	-	487	-	
폐지	-	IV-1-3	-			IV-1-3	-	842	-	
변경	-	IV-1-4	IV-1-2			IV-1-4	IV-1-2	5,571	4,959	완충녹지④⑨
폐지	-	IV-1-5	-			IV-1-5	-	5,690	-	
폐지	-	IV-1-6	-			IV-1-6	-	17,014	-	
변경	-	IV-1-7	IV-1-3			IV-1-7	IV-1-3	2,903	15,158	완충녹지⑥②
변경	-	IV-2	IV-2-1			IV-2	IV-2-1	2,740	2,253	공원④④
			IV-2-2			IV-2	IV-2-2	-	1,690	공원④⑤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	II-BL1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li> <li>• 창고 및 운송관련업</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li> <li>•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li> <li>•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li> <li>※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층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층 이하</li> </ul>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축선	-	-		
-	II-BL2 → -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li> </ul>	-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li> </ul>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li> </ul>	-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이하</li> </ul>	-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이하</li> </ul>	-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층 이하</li> </ul>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축선	-	-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	II-BL3 → II-BL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li> <li>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li> <li>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li> <li>※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시설</li> <li>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C2331)</li> <li>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C2332)</li> <li>석면,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C23994)</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축선	-	-
-	II-BL4 → II-BL3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li> <li>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li> <li>※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시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축선	-	-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	II-BL5 → II-BL4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li> <li>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li> <li>※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시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축선	-	-
-	III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li> </ul>	좌 동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시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 어 내 용	비 고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42호선과 중로 1-43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1-43호선과 중로 2-50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0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1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0호선과 소로 3-157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 소공원④

#### 가) 공원조성계획

#### 부지총괄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사다리 산27-1번지	2,740	감) 487	2,253	
변경	보 행 로		125	증) 183	308	
변경	운동시설		415	감) 349	66	
신설	휴양시설		-	증) 58	58	
변경	녹 지		2,200	증) 379	1,821	

#### 시설총괄표

구분	시 설 명	면 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비 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740	2,253	32	66	-	66	
변경	보 행 로	125	308	-	-	-	-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운동시설	415	66	-	66	-	66	파고라1동
변경	휴양시설	415	58	-	-	-	-	
변경	녹 지	2,200	1,821	32	-	32	-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면 적(m <sup>2</sup> )		위 치	시설규모(m <sup>2</sup>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740	2,253	사다리 산27-1번지	32	66	32	66	1	1	
보행로	1	1	125	308		-	-	-	-	-	-	
운동시설	2	2	415	66		-	66	-	66	-	1	1동
휴양시설	-	3	-	58		-	-	-	-	-	-	
녹지	3	4	2,200	1,821		32	-	32	-	1	-	

## 소공원㉞

### 가) 공원조성계획

## 부지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사다리 217-1번지	-	증) 1,690	1,690	
신설	보행로		-	증) 189	189	
신설	운동시설		-	증) 106	106	
신설	휴양시설		-	증) 36	36	
신설	녹지		-	증) 1,359	1,359	

## 시설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비 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1,690	-	106	-	106	
신설	보행로	-	189	-	-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운동시설	-	106	-	106	-	106	파고라1동
신설	휴양시설	-	36	-	-	-	-	
신설	녹지	-	1,359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면 적(m <sup>2</sup> )		위 치	시설규모(m <sup>2</sup>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1,690	사다리 217-1번지	-	106	-	106	-	1	
보행로	-	1	-	189		-	-	-	-	-	-	
운동시설	-	2	-	106		-	106	-	106	-	1	1동
휴양시설	-	3	-	36		-	-	-	-	-	-	
녹지	-	4	-	1,359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공원, 배수지, 저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2) 명 칭 :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당초 A=98,980㎡, 변경 A=86,283㎡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도 로	당초	중로1-42호선 L=581m, B=20~26m, A=14,241㎡		
	변경	중로1-42호선 L=392m, B=20~26.25m, A=9,056㎡		
	당초	중로1-43호선 L=224m, B=20m, A=4,275㎡		
	변경	중로1-43호선 L=224m, B=20m, A=4,340㎡		
	당초	중로2-50호선 L=654m, B=15~18m, A=10,244㎡		
	변경	중로2-50호선 L=501m, B=16~19.25m, A=8,024㎡		
	당초	중로2-51호선 L=601m, B=15m, A=9,027㎡		
	변경	중로2-51호선 L=444m, B=15m, A=6,741㎡		
	당초	중로2-52호선 L=332m, B=15~18m, A=5,463㎡		
	변경	중로2-52호선 L=332m, B=15~18.25m, A=5,355㎡		
	당초	-	-	
	변경	소로2-257호선 L=53m, B=8m, A=232㎡		
	당초	-	-	
	변경	소로3-157호선 L=120m, B=6m, A=731㎡		

# 사 천 시 공 보

제 709호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주차장	당초	28	A=1,500m <sup>2</sup>	
	변경	28	A=1,000m <sup>2</sup>	
	당초	29	A=1,500m <sup>2</sup>	
	변경	29	A=2,070m <sup>2</sup>	
완충녹지	당초	46	A=8,583m <sup>2</sup>	
	변경	46	A=15,450m <sup>2</sup>	
	당초	47	A=487m <sup>2</sup>	
	변경	47	A=0m <sup>2</sup>	
	당초	48	A=842m <sup>2</sup>	
	변경	48	A=0m <sup>2</sup>	
	당초	49	A=5,571m <sup>2</sup>	
	변경	49	A=4,959m <sup>2</sup>	
	당초	50	A=5,690m <sup>2</sup>	
	변경	50	A=0m <sup>2</sup>	
	당초	51	A=17,014m <sup>2</sup>	
	변경	51	A=0m <sup>2</sup>	
	당초	52	A=2,903m <sup>2</sup>	
	변경	52	A=15,158m <sup>2</sup>	
공원	당초	44	A=2,740m <sup>2</sup>	
	변경	44	A=2,253m <sup>2</sup>	
	당초	-	-	
	변경	가	A=1,690m <sup>2</sup>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당초	8	A=1,500m <sup>2</sup>	
	변경	8	A=1,824m <sup>2</sup>	
유수지 (저류시설)	당초	9	A=5,850m <sup>2</sup>	
	변경	9	A=5,850m <sup>2</sup>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당초	6	A=1,550m <sup>2</sup>	
	변경	6	A=1,550m <sup>2</sup>	
합 계	당초	-	A=98,980m <sup>2</sup>	
	변경	-	A=86,183m <sup>2</sup>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당초 - (주)장원 대표이사 구종배

          변경 - (주)장원 대표이사 최진태

2) 주 소 : 당초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2번지

          변경 -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 준공예정일 : 202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붙임>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기 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축동면 사다리	123	대	648	538	양태관	진주시 평거동 들말홍한타운			
2	축동면 사다리	135-1	전	1,580	1,580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3	축동면 사다리	135-2	전	87,461	72,064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4	축동면 사다리	135	전	2,205	2,205	김순남	부산 거제동 300-30			
5	축동면 사다리	182-1	전	1,322	1,322	정영수	축동면 사다리 586			
6	축동면 사다리	187	전	1,557	230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7	축동면 사다리	189	전	264	133	정정녀	축동면 사다리 237-1			
8	축동면 사다리	190	전	502	502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9	축동면 사다리	191	전	1,289	1,289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10	축동면 사다리	192	전	1,997	1,997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11	축동면 사다리	193	전	1,911	1,911	김재동	사천읍 평화리 44-13			
12	축동면 사다리	202	전	714	714	강용순	축동면 사다리 576			
13	축동면 사다리	203	입	506	506	강용순	축동면 사다리 576			
14	축동면 사다리	204	전	1,104	1,104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15	축동면 사다리	205	답	2,780	2,780	서권한	진주시 대축리 268			
16	축동면 사다리	206-1	전	757	757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17	축동면 사다리	206-2	전	1,924	1,924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18	축동면 사다리	207	대	13,411	7,206	양태관	진주시 평거동 들말홍한타운			
19	축동면 사다리	210	전	625	625	허태효	진주시 상대동 302-34			
20	축동면 사다리	211	전	691	691	허태효	진주시 상대동 302-34			
21	축동면 사다리	214-1	답	2,025	890	백수야	진주시 하대동 현대아파트			
22	축동면 사다리	214-2	답	827	468	장효기	축동면 배춘리 731-16	축동새마을 금고		근저당 설정
23	축동면 사다리	215	답	3,983	877	김희용	진주시 인사동 5-11			
24	축동면 사다리	216	답	4,083	2,432	백수야	진주시 하대동 현대아파트			
25	축동면 사다리	217-1	답	2,347	2,347	정학주	축동면 사다리 975			
26	축동면 사다리	217-2	답	1,666	1,547	정정녀	축동면 사다리 237-1			
27	축동면 사다리	217-3	전	423	423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28	축동면 사다리	218	전	198	198	강옥녀	사천읍 수석리 199			
29	축동면 사다리	219	답	1,574	446	정정녀	축동면 사다리 237-1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0	축동면 사다리	249-1	답	318	157	국토해양부				
31	축동면 사다리	250-7	창	2,418	228	국토해양부				
32	축동면 사다리	250	창	2,210	1,374	정정녀	축동면 사다리 237-1			
33	축동면 사다리	1044	구	76	76	농림수산 식품부				
34	축동면 사다리	1053	구	119	119	농림수산 식품부				
35	축동면 사다리	1054	구	354	354	농림수산 식품부				
36	축동면 사다리	산20-7	임	2,753	846	이종규	부산 중 부평동 15-1	서부산 세부서		압류
37	축동면 사다리	산26-1	임	49,933	49,413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38	축동면 사다리	산26-4	임	2,586	2,586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39	축동면 사다리	산26-10	임	7,140	7,126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40	축동면 사다리	산26-12	구	2,414	1,296	국토해양부				
41	축동면 사다리	산26-22	임	196	170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42	축동면 사다리	산26-23	임	481	481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43	축동면 사다리	산26-25	임	3,003	268	국토해양부				
44	축동면 사다리	산27-1	임	36,298	35,166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45	축동면 사다리	산28	임	496	86	유양수				
46	축동면 사다리	산29	임	694	694	기획재정부				
47	축동면 사다리	산39	임	30,248	13,142	김남영	축동면 사다리 237-1			
48	축동면 사다리	산40-1	임	9,620	9,456	정영수	축동면 사다리 728-1			
49	축동면 사다리	산41	임	5,576	5,258	배순희	산청 단성 방목 728-1	도동중앙 신협		근저당 설정
50	축동면 사다리	산42	임	15,096	15,096	배순희	산청 단성 방목 728-1	도동중앙 신협		근저당 설정
51	축동면 사다리	산43-3	임	54,909	1,356	양장훈	진주시 평거동 들말홍한타운			
52	축동면 사다리	산43-8	임	3,570	3,570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53	축동면 사다리	산43-9	임	2,975	2,975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54	축동면 사다리	산43-10	임	6,347	6,140	김규희 외 36인	진주시 상대동 한보타운	하태익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근저당 설정
55	축동면 사다리	산43-22	구	562	562	국토해양부				
56	축동면 사다리	산43-23	구	727	727	국토해양부				
57	축동면 사다리	산43-24	구	3,241	1,159	국토해양부				
58	축동면 사다리	산43-26	구	1,521	19	국토해양부				
59	축동면 사다리	산44	임	1,289	1,289	김송만	사천읍 선인리 신진아파트			
60	축동면 사다리	산45-25	구	165	165	국토해양부				
				387,709	271,060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축동면 사다리	123	대	538	538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2	축동면 사다리	135	전	2,205	2,205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3	축동면 사다리	135-1	전	1,580	1,580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4	축동면 사다리	135-2	전	71,957	71,957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5	축동면 사다리	182-1	전	1,322	1,322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6	축동면 사다리	187	전	232	232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7	축동면 사다리	190	전	502	502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8	축동면 사다리	191	전	1,289	1,289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9	축동면 사다리	192	전	1,997	1,997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0	축동면 사다리	193	전	1,911	1,911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1	축동면 사다리	202	전	714	714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2	축동면 사다리	203	임	506	506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3	축동면 사다리	204	전	1,104	1,104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4	축동면 사다리	205	답	2,780	2,780	서○○	진주시 정촌면 대죽리 2**	청주홍덕구		압류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5	축동면 사다리	206-1	전	757	757	아시아신타(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16	축동면 사다리	206-2	전	1,924	1,924	아시아신타(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17	축동면 사다리	207	대	7,227	7,227	아시아신타(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18	축동면 사다리	210	전	625	625	아시아신타(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19	축동면 사다리	211	전	691	691	아시아신타(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20	축동면 사다리	217-1	답	2,347	2,347	아시아신타(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21	축동면 사다리	217-3	전	423	423	아시아신타(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22	축동면 사다리	218	전	198	198	아시아신타(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23	축동면 사다리	1044	구	76	76	기획재정부				
24	축동면 사다리	1053	구	119	119	기획재정부				
25	축동면 사다리	1054	구	354	354	기획재정부				
26	축동면 사다리	산20-22	임	859	276	이○○	부산 중구 부평동 *가 1*.*	국(서부산세무서)		압류
								부산광역시 중구		압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압류
								서부산세무서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1*	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	가압류
								부평새마을 금고	부산 중구 부평동*가 **	근저당설정
27	축동면 사다리	산26-1	임	49,817	49,817	아시아신타(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28	축동면 사다리	산26-4	임	2,586	2,586	아시아신타(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9	축동면 사다리	산26-10	임	7,140	7,140					
30	축동면 사다리	산26-12	구	1,552	1,552	기획재정부				
31	축동면 사다리	산26-22	임	196	196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32	축동면 사다리	산26-23	임	481	481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33	축동면 사다리	산26-25	도	293	293	국토교통부				
34	축동면 사다리	산27-1	임	35,123	35,123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35	축동면 사다리	산28-1	임	92	92	유○○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			미등기
36	축동면 사다리	산40-1	임	9,438	9,438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37	축동면 사다리	산41	임	5,271	5,271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38	축동면 사다리	산42	임	15,096	15,096	박○○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시장길 2**,*호(대안동, 중앙시장*중*구)	서진주새마을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113(평거동)	근저당권 (지분2분의1)
						장○○	경남 진주시 금산면 덕의길 1*, 1**동 2**호(진주푸르지오)	서진주새마을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113(평거동)	지상권
										(지분2분의1)
39	축동면 사다리	산43-3	임	1,484	1,484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40	축동면 사다리	산43-8	임	3,570	3,570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41	축동면 사다리	산43-9	임	2,975	2,975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42	축동면 사다리	산43-10	임	6,139	6,139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43	축동면 사다리	산43-22	구	562	562	기획재정부				
44	축동면 사다리	산43-23	구	727	727	기획재정부				
45	축동면 사다리	산43-24	구	825	825	기획재정부				
46	축동면 사다리	산43-26	구	19	19	기획재정부				
47	축동면 사다리	산44	임	1,289	1,289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48	축동면 사다리	산45-25	구	165	165	기획재정부				
합 계				249,077	248,494					



# 사 천 시 공 보

제 709호

##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

### 1. 산업단지 명칭

○ 명 칭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부진입도로) 개발사업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내 소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부진입도로를 지정하고자 함

###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5번지 일원

○ 면 적 : 1,331㎡ [소로2-258호선 (L=84m, B=8m)]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20. ~ 2022. 12. 31.

○ 개발방법 : 실수요자개발방식

### 5. 주요 유치업종 (해당없음)

###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자 최 진 태

○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현황

구분	계	전	묘	임	도	기타
필지수	7	2	1	1	3	
면적(㎡)	1,331	580	468	200	83	
구성비(%)	100.0	43.6	35.2	15.0	6.2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나. 소유자별 현황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토교통부	사천시	
필지수	7	5	1	4	2
면적(㎡)	1,331	557	39	518	774
구성비(%)	100.0	41.8	2.9	38.9	58.2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도로(소로2-258호선)	1,331	100.0	

### 나. 기반시설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258	8	국지도로	84	소로2-257	사다리 산42-1	일반도로			

## 9.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330,000천원은 사업시행자가 전체 조달

###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진입도로	1,331㎡	330,000	120,000	120,000	90,000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붙임)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해당없음)

##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 사천시 무상귀속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도로(소로2-258호선)	1,331	100.0	사천시무상귀속

○ 사업시행자 귀속 : 해당없음

##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258	8	국지도로	84	소로2-257	사다리 산42-1	일반도로			

### 나.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258호선	신설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로 소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부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자 함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산업입지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축동일반산업단지외사업(부진입도로)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 로

#### (1)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258	8	국지도로	84	소로2-257	사다리 산42-1	일반도로			

#### (2)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2류 258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li> <li>- 폭원 : 8m</li> <li>- 연장 : 8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로 소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부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노선 신설</li> </ul>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축동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부진입도로) 개발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도 로	소로2-258호선	L=84m, B=8m, A=1,331㎡	노선신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주)장원 대표이사 최진태
- 2) 주 소 :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 준공예정일 : 202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붙임>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축동면 사다리	194-1	도	285	2	사천시				
2	축동면 사다리	198	전	598	6	사천시				
3	축동면 사다리	200	전	1,253	574	이경희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91-45, 14동 504호(토성아파트)	진주서부농 업협동조합	경남 진주시 진주성로 77(봉곡동)(평거 지점)	근저당
4	축동면 사다리	1049	도	89	39	국(국토교통부)				
5	축동면 사다리	산42-1	도	276	42	사천시				
6	축동면 사다리	산45	묘	4,463	468	사천시				
7	축동면 사다리	산46	임	694	200	박노길	배춘리			미등기
합 계				7,658	1,331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48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 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 01. 14.

##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 1. 14. ~ 2021. 1. 28.(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67마3326	스펙트라	권*분	2021.01.11.	명의를 빌려준 후 연락이 두절됨

####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사천시 공고 제2021-30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나.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고, 모호한 위원의 제척사유 삭제(안 제8조제3항)
- 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 수정(안 제29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올바른 약칭 사용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 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 /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21,

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사천시 조례 제2021- 호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  
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로,  
“시” 를 “사천시”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를 “다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한 차례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잔여기간”  
을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법 제32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  
우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규정한” 을 “정한” 으로,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사항을” 을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에 한함” 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경우에 한함” 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완료로 인하여” 를 “완료에 따라”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6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23조 중 “기하기 위하여” 를 “위하여” 로 한다.

제29조 중 “제26조제2항제1호” 를 “제26조제1항제1호”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7조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지방보조금"이란 <u>시</u>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4조(보조대상 사업) <u>시장</u>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1. ~ 4. (생략)</p> <p>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④ (생략)</p> <p>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한 차례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u>까지</u>----- <u>사천시</u>-----</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 <u>다음과</u> -----.</p> <p>1. -----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u>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조대상 사업)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한 차례만</u> -----</p>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신설>

제8조(회의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생략)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 남은 기간 -----  
-----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법 제32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2조(운영세칙) ----- 정한 -----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 6. (생략)
- ② (생략)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 3. (생략)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생략)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에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운영에

제14조(보조신청)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경우에만 해당한다-
5.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교부결정)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6조(교부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완료에 따라 -----  
 -----  
 -----  
 -----  
 -----  
 -----.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  
----- 제16조  
에 따른 -----



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생략)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감독 등) -----  
----- 위하여 -----  
-----  
-----  
-----  
-----  
-----.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 제26조제1항제1호-----  
-----  
-----  
-----.

# 사 천 시 공 보

제 709 호

## 관 련 법 규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9호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